

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

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

2024. 10. 8.
행정건설위원회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: 2024. 9. 27. 마포구청장
나. 회부일자: 2024. 9. 30.
다. 상정일자: 제271회 임시회 제1차 행정건설위원회(2024. 10. 8.)
상정, 심사, 의결

2. 제안설명요지 【제안설명자: 행정지원과장 김현정】

가. 제안이유

「민선8기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조직운영을 위한 현재 규모의 정원 내에서 효율적으로 인력을 재배치하기 위하여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.

나. 주요내용

- 일반직 직급별 정원 조정에 따른 [별표 3] 개정
 - (일반직) 본청 4급 6명 → 8명(+2명)
 - (일반직) 본청 5급 37명 → 39명(+2명)
 - (일반직) 6급이하 계 1,373명 → 1,369명(△4명)

다. 참고사항

- 「지방자치법」 제125조, 「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 제24조, 제29조, 제30조
- 입법예고 : 2024. 9. 12. ~ 9. 18. 결과: 의견 없음

3. 검토보고(전문위원 유준상)

-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구청장이 제출하여 행정건설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으로 민선8기 후반기 핵심사업 추진 역량 강화를 위한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정원 반영을 위하여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
-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존의 정원기준을 완화하고 기구 설치에 대한 지방정부의 재량권을 확대하여 지방자치 단체의 특수한 상황이나 업무량 증가 등에 따라 조직운영의 유연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인 바 법적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.
- 주요내용으로는 일반직 본청4급을 6명에서 8명으로, 5급을 37명에서 39명으로 2명씩 증하고 6급이하 계 1,373명에서 1,369명으로 4명을 감하는 내용임.
- 종합 검토의견
 -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민선8기 후반기 핵심사업 추진 역량 강화를 위한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정원 반영을 위한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4급 및 5급 정원의 확대는 주요 직위자의 업무 부담을 줄이고, 인력 재배치를 통해 공무

원들이 보다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로 이해되며,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에게 직급 상향을 통해 동기 부여를 제공하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이나,

- 직급 확대와 관련하여 단순한 승진 인사로 인식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며, 직급 상향에 따른 예산 증가와 관련한 사항이 함께 고려되어 중장기적인 예산 계획 수립 시 인건비 증가를 고려하여 전체 예산 구조에 미치는 영향도 검토가 필요할 것임.

4. 질의 및 답변요지: 생 략
5. 토론요지: 없 음
6. 심사결과: 원안가결
7. 기타 소수의견의 요지: 없 음
8. 기타: 없 음

[별표 1] 관계 법령

「지방자치법」

[시행 2024. 5. 17.] [법률 제19951호, 2024. 1. 9., 타법개정]

제125조(행정기구와 공무원)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둔다.

② 제1항에 따른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조례로 정한다.

「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

[시행 2024. 3. 29.] [대통령령 제34370호, 2024. 3. 29., 일부개정]

제24조(정원의 관리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직간의 균형있고 합리적인 정원 관리를 위하여 지방공무원 종류별로 정원책정기준에 따라 정원을 책정하여야 한다. 이 경우 공무원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조례로 정한다.

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년 6월 30일과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정원의 적정 여부와 정원의 증원과 감축현황을 조사·확인하여야 하고, 시·도지사는 그 조사·확인결과를 지방자치단체별, 기관별, 직급별, 직렬별로 종합 작성한 후 다음 달 말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새로운 증원수요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영과 효율적인 인력관리를 위하여 우선적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정원의 범위에서 자체조정을 통하여 이에 대처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조정대상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서와 같다.

1. 여건의 변화로 인하여 업무의 필요성이 감소된 분야의 인력
 2. 유사·중복되거나 지나치게 세분화된 기구에 소속된 인력
 3. 업무의 성질상 법인, 그 밖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는 업무분야의 인력
- ④ 특별시장·광역시장·도지사·특별자치도지사(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)는 해당 시·도와 관할 시·군·구간 또는 관할 시·군·구 상호간의 지방공무원 정원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를 거쳐 정원을 조정할 수 있다. 이 경우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조정되는 정원에 해당하는 현원은 가능한 한 그 정원이 조정되는 지방자치단체로 함께 이관하여야 한다.
-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효율적인 정원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원의 관리기관별 지방공무원의 정원을 조정할 수 있다.

제29조(직급별 정원)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합리적인 직급 체제를 이룰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제30조(정원의 규정) ①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1. 집행기관의 정원(제3호에 따른 공무원의 정원은 제외한다)
2. 삭제<2020. 3. 10.>
3. 지방공립대학에 두는 교육공무원의 정원
4. 의회사무기구의 정원
5. 합의제행정기관의 정원

②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[「지방전문경력관 규정」 제2조에 따른 지방전문경력관(이하 “지방전문경력관”이라 한다)의 정원을 포함한다]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22조 제2항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 다만, 시·도의 5급 이하(시·군·구는 6급 이하) 직급별 정원과 지방전문경력관의 정원은 조례로 그 총수만 정하고 그 범위에서 제22조 제2항에 따른 정원의 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.

③ 지방공무원의 직렬별 정원(지방전문경력관의 경우에는 「지방전문경력관 규정」 제4조 제1항에 따른 직위군별 정원을 말한다)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22조 제2항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.

④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제2항에 따른 정원의 범위에서 공무원을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하여야 한다. 다만, 상위직급에 결원이 있을 경우에는 그 결원의 범위에서 동일 직렬의 직급의 하위직급을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할 수 있다.

⑤ 「지방공무원법」에 따른 겸임의 경우에는 제4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.